제시문 가,나,다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공공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제시문 다는 공공성의 정의를 제시문 가,나와 다르게 본다.이는 공동체의 인정 여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제시문 다는 공동체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제시문 ;다에 따르면 공동체는 개인들로 구성된 허구체에 불과하며,공동체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시문 다는 공리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원리이다.
제시문 가와 나는 공동체의 여부를 인정하나, 공적 영역의 범위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보인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공공성은 나라의 안녕,문명,국민의 안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를 위해 정부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한 행위의 구체적인 예로 법치 확립과 공공사업의 시행을 들 수 있다.이는 제시문 가에서 공적 영역은 정부에 한정되었으며 사적 영역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는 좁은 의미에서의 공적영역임을 보여준다.
반면 제시문 나는 공공성을 공중의 이익으로 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가 한 행위의 구체적 예로 공론장을 마련하고 공중의 비판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이는 제시문 나에서 공적 영역은 정부에 한정된 것이 아닌 시민단체라는 사적 영역과 함께 구성된 것이며 넓은의미의 공적영역이라는 것을 드러낸다.